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2022년 5월 24일(화) 오전 7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2. 5. 24.(화)	담당부서	전력시장과
담당과장	강경택 과장(044-203-3910)	담 당 자	류창환 사무관(044-203-3911)

"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"

- 「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」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-
- 국제 연료가격 급등 시 전기요금 인상요인 완화 기대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'22년 5월 24일 **'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' 제도**의 **신설**을 담은 **「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」 등**의 **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***('22.5.24~6.13, 20일간)하였다.

* 「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」, 「소규모 신·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」 행정예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'22.5.24 08:30부터 확인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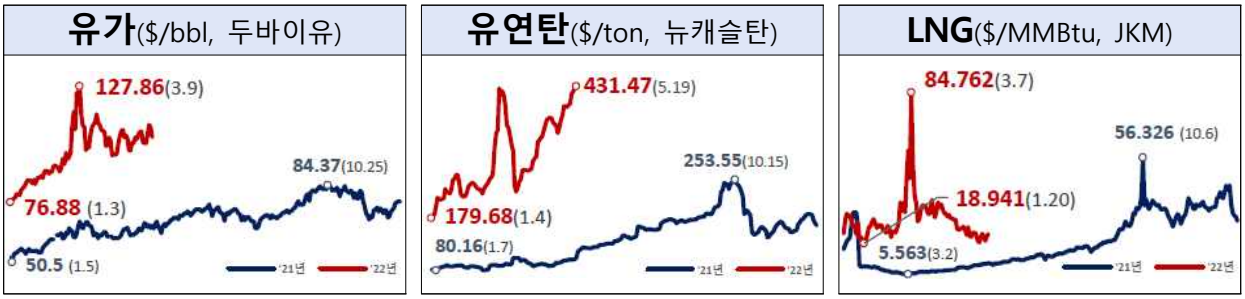
□ 이번 행정예고는 **전력시장가격(SMP*) 급등**에 따른 **전기소비자 부담**을 **줄이기 위해 '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' 제도**를 **도입**하고자 **이루어졌다.**

* (System Marginal Price, 원/kWh)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

○ 이는 최근 (감염병) 세계적 유행 이후 **수요회복**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**러-우 전쟁**이 발발하여 **국제 연료가격**이 **유래없는 급등세***를 보임에 따라

* (유가, $/bbl) '22.5.20 108.07 ('21년 대비 56%↑, '20년 대비 156%↑)
(유연탄, $/ton) '22.5.20 436.07 ('21년 대비 214%↑, '20년 대비 622%↑)
(LNG, $/mmbtu) '22.5.20 21.93 ('21년 대비 18%↑, '20년 대비 398%↑)

< 국제 연료가격 추이('21.1~'22.5.19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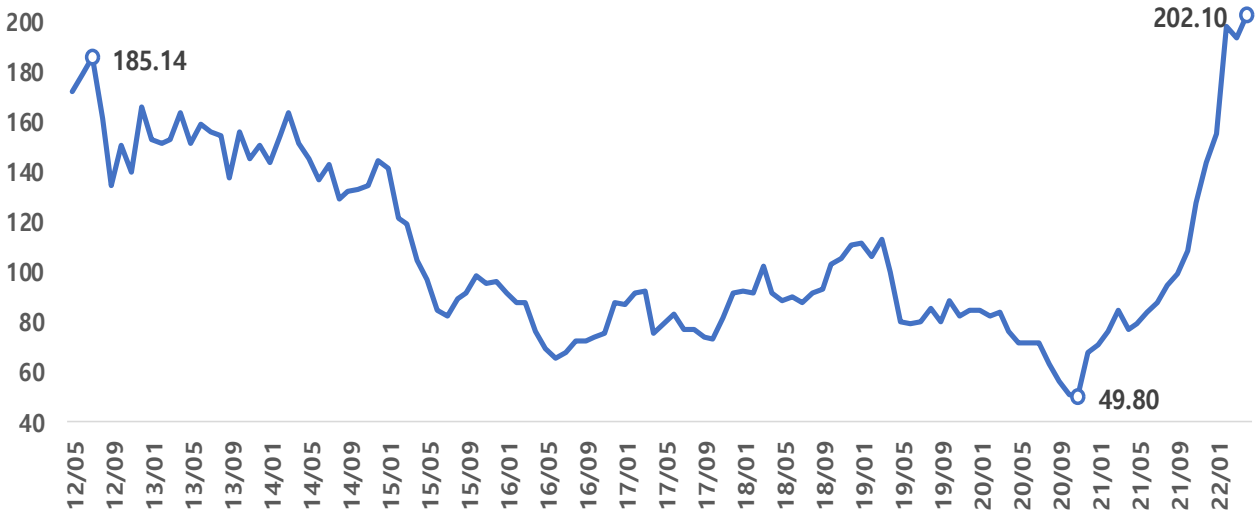
○ 향후 **국제 연료가격 급등** 등에 따라 **국내 전력시장가격(SMP)**이 **상승***하고 **전기소비자**들이 **부담**해야 **할 금액**이 **급증**하는 **상황**에 **대비**하기 **위함**이다.

* 전력시장가격(SMP)은 거래시간별 수요·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(주로 LNG발전기)의 발전비용으로 결정 후 연료비와 무관한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어, '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 200원대 기록('22.4월 202.1원/kWh)

○ 전기사업법에 **정부**와 **전기사업자 등**이 **전기소비자**를 **보호**하도록 **규정**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**구체화**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
* **전기사업법 제4조(전기사용자의 보호)**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전기사업법 제33조(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)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<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('12.5~'21.4, 단위 : 원/kWh) >



□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**전력시장**에서 **시간대별 전력수요**를 **충족**하는 **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**을 **기준**으로 **산정**되는 **전력시장가격**(SMP)으로 **정산**을 받아왔다.

○ **국제 연료가격**이 **상승**하면 **전력시장가격(SMP)**도 **상승**하게 되는데, **최근**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**과도**하게 **급등**할 경우 **전력시장가격(SMP)**도 **급등**하면서 발전사업자들 **정산금**도 **급증**하기 마련이다.

○ 발전사업자 **정산금**은 결국 **한전**이 **부담**하고 이를 **전기요금**으로 **회수**하는 **구조**이다 보니 **정산금 증가**는 결국 **전기소비자**의 **부담**으로 돌아오게 된다.

□ 이번에 신설하려는 **'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'** 제도는 **국제 연료가격 급등** 등에 따라 **전력시장가격**이 **비정상적**으로 **높은 수준**까지 **상승**할 경우 **한시적**으로 **평시 수준**의 **정산가격**을 **적용**하도록 하였다.

<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주요 내용(시행월 기준) **>**

○ **(시행조건)** 직전 3개월 가중평균 전력시장가격(SMP) ≧ 120개월(직전 123~4개월) 월별 전력시장가격(SMP) 상위 10%, **시행월 한시 적용(1개월)**

○ **(상한수준)** 120개월(직전 123~4개월) 가중평균 전력시장가격(SMP) × 125%

○ **(적용대상)** 전력시장가격(SMP)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

○ **직전 3개월** 동안의 **전력시장가격(SMP) 평균**이 **과거 10년** 동안의 **월별 전력시장가격(SMP)** 평균값의 **상위 10%**에 해당될 경우 **1개월 동안 적용**되며, **상한가격**은 **평시 수준**인 **10년 가중평균 전력시장가격(SMP)**의 **1.25배 수준**으로 정하도록 하였다.

○ **실제 연료비**가 상한가격 보다 **더 높은** 발전사업자에게는 **실제**

연료비를 **보상**해주고,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**제한없이 지급**함으로써 **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.**

□ 산업부는 **행정예고 기간** 동안 **제시**되는 **전기소비자** 및 관련 **사업자** 등의 **의견**을 **수렴**하여, 국내 전력시장에서 **소비자**가 **적절히 보호** 받을 수 있는 **제도**를 **도입**할 **계획**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류창환 사무관(☎044-203-39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